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	9007 91
번호	2007 ~ 31

제출일자	2007. 9. 18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,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 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·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.
-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"거창박물관조례"로 변경함.
- 나.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함(안 제1조).
- 다.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. (용어의 정의, 관람절차, 관람료 징수방법, 관람료 면제조항 등)
- 라.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3조).
 -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·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.
 - 위원은 박물관담당 부서장과 박물관운영에 식견 있는 학계, 문화· 예술계,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, 임기는 2년, 연임 가능함
- 바. 박물관자료의 취득, 구입, 기증,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- 사. 관람자의 행위제한,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(안 제10,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7조, 제12조, 제25조

「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」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○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(2007. 7. 31. ~ 8. 25.)결과 : 의견 없음.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박물관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거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치) 거창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-5번지에 둔다.
- 제3조(개관 및 휴관)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.
 - 1. 1월1일, 설날, 추석날
 - 2. 매주 월요일
 -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
 - ②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, 군청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.
- 제4조(관람시간)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- 1. 3월 1일부터 10월 31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 - 2.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- 제5조(업무)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조제3호에서 규정

하는 "박물관자료"의 수집, 관리, 보존, 조사, 전시 및 연구

- 2. 향토사 및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 · 조사 · 연구
- 3. 박물관자료와 관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4.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6조(공무원) 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제7조(박물관자료의 취득) 박물관자료는 수집, 구입, 기증, 기탁, 관리전환 에 의하여 취득한다.
- 제8조(박물관자료의 구입)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.
- 제9조(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) ①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,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.
 - ②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.
- 제10조(행위의 제한) ①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
 - 2. 흡연,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
 - 3.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
 - 4.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
 - 5.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②박물관 근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 거절 및 퇴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입장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 장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술에 취한 자
 - 2. 정신이상자

- 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
- 4.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- 5.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
- 6.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제12조(변상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자료, 관람시설, 물품 등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운영위원회)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박물관을 관장하는 부서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- ③위원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, 문화·예술계,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-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 - ⑦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한다.
 -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- 1.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2.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
- 4.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